

발행번호	<b>부동산 양도(□신고 □확인)서</b>			처리기한
제 - - 호				즉 시
등 기 의 무 자(매 도 인)				
①성 명		②주민등록번호		
③주 소	( ☎ )			
등 기 권 리 자(매 수 인)				
④성 명		⑤주민등록번호		
⑥주 소	( ☎ )			
부 동 산 양 도 내 용				
⑦부동산 소재	⑧종 류	⑨면 적(㎡)	⑩계 약 일 자	⑪잔 금 일 자
<p>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내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고인 또는 수입자 : 주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세무서장 귀하</p>				
⑫첨 부 서 류				
<p>위와 같이 부동산 양도내용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세무서장 &lt;인&gt;</p>				
<p>※ 1. 이 확인서는 소유권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2. 확인서 사용 전에 부동산양도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신고내용에 따라 재발급하여 드립니다.</p>				
<p>※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그 신고기간(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)의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양도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.</p>				

이 신고서는 등기신청서별 별지로 작성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## 1. 작성방법

- 가. 매도인, 매수인 및 양도자산 내역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나. 2인 이상이 공유자산을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별로 신고서를 작성하되 첨부서류는 한부만 첨부하여 양도인중 1인의 관할세무서로 신고하십시오.
- 다. 양수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 명단을 별지로 작성하십시오.
- 라. ⑦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및 아파트 동·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마. ⑧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매하더라도 별도의 칸에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바. ⑩계약일자는 계약서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.
- 사. ⑪잔금일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,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날 또는 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자를 기재합니다.
- 아. ⑫첨부서류는 부동산양도내용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서류명, 수량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2. 첨부하여야 할 서류

매매하는 물건별 등기부 등본, 토지대장(취득당시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)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각1부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서류를 추가로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토지대장의 경우 취득일이 1984.12.31이전이면 1985.1.1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.

- 가.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
  - 비과세 증빙서류 또는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
- 나.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취득 또는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※ 1. 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의문사항은 세무서, 각 지방국세청, 국세청의 민원실 및 재산세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.

2. 우체국에 비치된 왕복민원우편을 이용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우송하시면 세무서에 오시지 아니하고서도 원하는 곳에서 신고확인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.